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 20.

담양군의회 의장



1. 규칙명 :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으로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동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증대 정책 효과를 실현코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사업 지원내용에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신설

(안 제6조의2 제1항제2호)

•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사업 : 출생신고 후 1년 이상 부모가 같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인구사업 :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총칭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1. 27.(8일간)

5. 의견제출

-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사업 : 출생신고 후 1년 이상 부모가 같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을 신설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를 “제6조의2제1항제3호”로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를 “제6조의2제1항제4호”로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를 “제6조의2제1항제6호”로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6호를 “제6조의2제1항제7호”로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7호를 “제6조의2제1항제8호”로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8호를 “제6조의2제1항제9호”로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를 “제6조의2제1항제10호”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지원내용 및 대상) ① 제6조에 따른 인구사업의 내용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사업 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 금, 지원금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내용 및 대상) ① - ----- ----- -----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사업 : 출생신고 후 1년 이상 부모가 같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 주하는 세대
2. (생 략)	3. (현행 제2항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항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항과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항과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항과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항과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항과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항과 같음)